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중랑구 제3선거구

강대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면적을 축소(85㎡→60㎡)
하고, 부과횟수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을 내용으로, 지난 2019년 4월 23일 「건축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에서는 이행강제금 감경대상을 기존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에서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로 축소하고,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

강제금 부과횟수 제한(최대 5회) 규정을 폐지하는 한편, 공개
공지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리와 관련한 조문을 별도의 항목
으로 설치함과 아울러 이행강제금과 관련된 개정조문은 건축법
[법률 제16380호] 시행일에 맞추어 시행하도록 경과조치를
신설함으로써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